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2월 2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인사혁신처 소관) 진 영

● 법률 제17752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제63조제4항 신설).

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제95조제1항).

다. 법 제92조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요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전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제95조제2항).

<법제처 제공>